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2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7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년 3월 9일) 상정 의결 보류
제8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년 9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 개정이유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노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이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영등포구 노인분들의 적극 보호와 경로사상의 함양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기금의 재원(안 제3조)

- (가)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 (나) 기타 수익금

(2)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육성
- (나)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 (다) 노인문제 상담, 연구 및 고령자 취업알선

(3)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가) 10인 내외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나) 당연직 :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 (다) 위촉직 : 영등포구의회 의원(2명),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
노인복지관련단체장(2명)

(4) 기금운용의 계획(안 제11조)

- (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나)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본 조례(안)중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바, 출연금의 규모에 따라 정기예금 수익금 등이 달라지므로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일반회계 출연금 조성을 위한 추경예산 심의시 출연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구지회 육성이라던가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취업알선 등 7가지로 여러 분야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현대 고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6조제6항의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164호
------------	-------------

제출년월일 : 2001. 9. 10.
제 출 자 : 박정자위원외1인

1. 수정 이유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 등을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수해자인 관련단체를 참여시킬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주요 골자

- 안 제6조제4항제3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을 삭제
- 안 제6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제3호 및” 삭제
- 안 제6조제6항의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에서 “제3호 및” 삭제하는 내용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④ 생 략 1.~2. 생 략 3. <u>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u> 4. 생 략</p> <p>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원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⑥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④ (원안과 같음) 1.~2. (원안과 같음) 3. 삭제 4. (원안과 같음)</p> <p>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원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⑥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164
------------	-----

제출년월일 : 2001. 2.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들어나는 노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이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영등포구 노인분들의 적극 보호와 경로사상의 함양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안 제3조)

- 1)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 2) 기타 수익금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육성
-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 3) 노인문제 상담, 연구 및 고령자 취업알선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1) 10인 내외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2) 당연직 :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 3) 위촉직 : 영등포구의회 의원(2명),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 노인복지관련단체장(2명)

라. 기금운용의 계획(안 제11조)

-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3조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555호('99.1.15 공포)

나. 예산조치

- 1) 조례 통과후 일반회계 출연금 조성
- 2) 기타 총액 2억 원 이상 조성후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 지원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의 선양
4. 노인문제 상담·연구 및 노인 취업알선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

4.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령화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기금의 목적에 상응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본 기금의 설치가 일반예산과 별도로 우리 구 노인분들 전체의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임을 감안할 때 관련 단체의 집중적인 육성지원은 편향적인 지원이 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포괄적인 분야에 사용되도록 검토가 요망됨.

제6조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한 것은 부족한 감이 있으며, 사안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위촉직인 구의원과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민간분야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조례안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2000년부터 경제적인 여건과 본 조례안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연된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 등을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수혜자인 관련단체를 참여시킬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주요골자

- 안 제6조제4항제3호의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을 삭제,
- 안 제6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제3호 및” 삭제
- 안 제6조제6항의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에서 “제3호 및” 삭제하는 내용.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항제3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